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특정한 금융
	보도	배포 시부터 즉시	배포	2016.9.21(수)
책임자	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하 주 식(02-2100-2610)	담당자	최치연 사무관(02-2100-2611) 정은수 주무관(02-2100-2615) 박학용 주무관(02-2100-2616)	

제 목 :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정 제정

- ◆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자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금융관련 협회, 금융지주회사, 금융권 비영리법인 등으로 확대함
- ◆ 2차 햇살론('16~'20년 지원) 업무·재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진흥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보증재원 조성·운용 관련사항을 규정
 - 금년부터 근로자 햇살론의 차질없는 공급(연 2.2조원 수준)을 위해 저축은행·상호금융권 출연요율·기간 등을 구체화 함
- ◆ 서민·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위해 신복위 협약 가입기관을 현재 3,650여개→4,800여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,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절차별 기한도 명시함

1 추진배경

- 서민·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,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정기구화 등을 골자로 하는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(제정법)」 시행('16.9.23일)에 맞추어,
-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안이 국무회의('16.9.20일)에서,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」 제정안이 금융위('16.9.21일)에서 의결됨

- 시행령과 규정을 통해 조직설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, 원활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보증계정 조성, 채무조정 절차 등을 구체화 함

2 주요 내용

가. 서민금융진흥원·신용회복위원회의 구성

- ①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자할 수 있는 자의 범위(시행령 §5, 규정 §3)
 - ※ [법률내용] 정부, 금융회사, 캠코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자 허용
 - 영위사업의 성격, 출자능력 등을 감안하여 금융협회, 금융지주회사, 금융권 비영리법인, 신복위 등의 진흥원 출자 허용
- ②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·신용회복위원회의 구성(시행령 §14, §50)
 - ※ [법률내용]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 및 신용회복위원회 위원(민간전문가)의 요건으로 소비자단체 근무자, 소비자 관련 전공 교수, 변호사, 회계사 등 규정
 - 다양성·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·경제·사회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·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

나.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

- ① 서민금융협회의 구성·운영 관련사항 규정(시행령 §22)
 - ※ [법률내용] 진흥원에 서민금융 협의·조정을 위한 협의체(서민금융협의회) 설치
 - (구성: 11인 이내) 금융위 부위원장(의장), 진흥원장, 신복위원장, 금감원 부원장, 캠코 사장, 민간전문가(금융협회, 금융회사, 대학·연구기관 등)

- (협의사항) 서민금융 정책 수립·추진 관련 사항,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민·관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

② **햇살론(보증부대출) 보증계정 관련사항**(시행령 §42~§43, 규정 §6~§7)

※ [법률내용] 저축은행, 상호금융 등의 출연금으로 보증계정 조성

- (보증계정 조성) 저축은행, 상호금융권(농협·수협·새마을·신협·산림조합)의 출연요율·기간 등 구체화

- (출연금) 2차 햇살론* 보증재원(9천억원) 구성에 필요한 각 금융권별 출연금 총액을 규정

* 정부재정(5년간 8,750억원) 및 저축은행·상호금융권 출연금(6년간 9,000억원)으로 조성될 보증재원(1조 7,750억원)을 바탕으로, '16~'20년중 저축은행·상호금융권이 2차 햇살론 보증대출(90% 보증) 공급 예정

* 금융권별 2차 햇살론 출연총액(억원)

금융권	농업협동조합	수산업협동조합	상호저축은행	새마을금고	신용협동조합	산림조합
출연총액	3,473	300	1,800	2,126	1,226	75

- (출연요율) 매월 출연금 산정을 위해 각 회사별 대출금에 대한 출연요율*을 규정(입법예고안에서 일부 조정)

* 천분비 : 농협 0.3, 새마을금고 0.44, 신협 0.41, 저축은행 0.5, 수협 0.36, 산림 0.58

- (출연기간) 금융권과의 협의내용(6년 납부)을 감안하되, 향후 예기치 못한 상황 변동 등에 대비하여 최대 10년간 출연할 수 있도록 함

* 다만, 금융권별 목표액 출연이 완료되는 경우 조기 종료

- (보증계정 운용) 보증재원 운용 관련사항, 보증한도 등을 규정

- 보증재원 운용상 일시적 자금 미스매칭 발생시, 금융회사 또는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차입 허용

- 1차 햇살론('11~'15년중 신보중앙회 공급)과 동일하게 총 보증한도는 보증재원의 최대 15배, 동일인 보증한도는 5,000만원으로 운영

③ **사용금지 대상인 정책 서민금융상품 명칭 구체화**(규정 §10)

※ [법률내용] 서민금융진흥원,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자가 정책 서민금융상품(유사)명칭을 사용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- 미소금융, 햇살론, 바뀐드림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(유사)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, 서민금융 수요자의 불필요한 오인·혼란을 방지*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

* 일부 대부업체 등에서 '미소대출', '햇살론'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여 서민·취약계층을 유인하는 사례 등이 발생

④ **수수료 면제대상 구체화**(시행령 §18)

※ [법률내용] 서민금융진흥원이 받을 수 있는 종합상담, 대출, 보증 등의 업무 관련 수수료를 일부 대상자에게는 면제 가능

- 기초수급자, 국가유공자, 중증장애인 등*에 수수료 면제

* 아울러, 향후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면제대상 취약계층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도 마련

다.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

① **채무조정 절차 구체화**(시행령 §53~§54)

※ [법률내용]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근거 마련

-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채무조정 신청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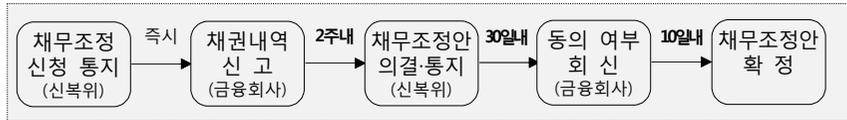
①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할 것

②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(담보채무액은 10억원 이하, 무담보채무액은 5억원 이하)

③ 개인채무자의 재산·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협약으로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(최저생계비 이상 수입)의 채무상환 능력을 갖출 것

-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시 **인적사항, 재산·채무내역, 소득**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**신용회복위원회**에 제출토록 함
- **신속·효율적인 채무조정 지원**을 위해 금융회사의 채권내역 신고, 채무조정안 심의·의결, 조정안에 대한 동의여부 회신 등 **채무조정 절차별 기한을 규정함**

< 채무조정 절차 흐름(도) >



2] 협약체결 대상기관 확대(시행령 §55, 규정 §8)

※ [법률내용]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회사 등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근거 마련

- 서민에 대한 **채무조정 지원 확대**를 위해 **캠코, 보증기관(신·기보 등), 자산유동화회사,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, 파산재단** 등 추가

➔ **협약체결 기관이 현재 3,650여개 → 4,800여개 수준으로 대폭 확대**

* 추가기관(예상): 대부업체 100여개, 신협조합 350여개, 새마을금고 240여개 등

- 다만, 대상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른 **신용공여의 특성** 등을 감안할 때 **협약체결의 실익이 크지 않은 금융투자업자, 체신관서**는 **의무 체결 대상에서 제외**

* 증권회사가 영위하는 신용거래용자, 예탁증권 담보용자는 증권을 담보로 하며, 투자자의 증권투자 목적으로 제공됨

3 | 향후 일정

□ **관보 게재 절차 등을 거친 후 '16.9.23일부터 시행** 예정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
prfsc@korea.kr

넓게 들었습니다
바르게 알려겠습니다

참고

「서민금융생활지원법」에 따른 조직설립

- ① (진흥원) 자금공급(미소금융), 개인보증(햇살론) 등 자금지원 업무 통합 - 국민행복기금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'바뀌드림론'도 통합·관리
- ② (신복위) 진흥원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고, 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**사무국 설치**
- ③ (업무 상호위탁) 서민금융 지원 현장에서 진흥원-신복위간 상담·접수 등 **단순 업무 위탁을 통해 효과적으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**

